



“공인 보도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준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

언론중재위원회 ‘공인보도와 인격권’ 세미나 개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경북 문경STX리조트에서 개최된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는 ‘공인보도와 인격권’이라는 주제로 공인보도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심도 깊게 다뤄졌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인보도에서 어느 선까지 공개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 세심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인의 범주 등 공인보도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언론인들이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준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인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 관련 보도에서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기본 임무이므로, 공인 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 등도 공적 인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범주가 넓어짐에 따라 다종다양한 공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형을 세분화해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내밀영역은 보장돼야 한다며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가족이나 연인 등 주변 인물은 공인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는 경우 가족 등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은 언론자유와 공인의 인격권, 두 가치의 균형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보도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피해를 신중하게 비교한 후 보도 여부를 결정하고 보도내용을 다듬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종국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의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승 위원(서울제6중재부)은 공인 범위에 대해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인의 경우 공직자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우리 사법부의 공인에 대한 이해를 요약하면, ‘공직자를 포함한 공인이라 국민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도덕적이고 정당하게 공적 활동을 해야 하는 존재로서 이들에 대한 정보는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며 언론의 감시, 비판, 견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라며, 미국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아직은 공인이 공직자와 유사한 인물처럼 이해되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고자 하고 미디어에 의해서 유명해진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인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제민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보도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만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도 대상이 공인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지만, 공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관심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언론인과 중재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공인 보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보도와 인격권’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